



## 제재조치 공지

# COMEX 19-1122-BC-8

발효일: 2024년 3월 6일

문서번호: [COMEX 19-1122-BC-8](#)

회원여부/비회원: **AARON DAO CHANG PANG**

규정위반: **432. 일반 위반 (일부)**

다음은 위반 행위이다.

**B.1.** 기만 또는 악의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를 시도하는 행위

**C.** 부정직한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I.** 이사회, 위원회 또는 거래소 직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조사결과: 2023년 10월 2일, CME Group 시장규제부 최고규제책임자는 다음의 주장에 근거하여 Aaron Dao Chang Pang이 거래소 규정 432.B.1., 432.C., 및 432.I.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최소 2018년 7월에서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Pang은 CME Group의 인터내셔널 인센티브 프로그램 (“IIP”)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Pang은 IIP에 참여하여 은 선물 (*Silver futures*) 시장에서 할인된 거래비용을 적용받고자 3 *Crowns*를 자기매매회사로 속였다. 그 결과 3 *Crowns*는 \$3,398,251.18의 거래 비용을 할인 적용받았다.

2024년 2월 14일, COMEX 영업행위위원회 (“BCC”)의 심리 위원장은 Pang이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하는 데에 실패하여 제소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Pang은 본 안에 대한 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제재내용: 기록 및 위원단의 판단에 근거하여, 위원단은 본 건 및 연계 건인 NYMEX 19-1122-BC 와 관련하여 총 \$250,000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 중 \$100,000이 COMEX에 배정), CME Group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트레이딩플로어에의 직접적 접근 및 CME Group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지정계약시장, 파생상품청산기관 또는 스왑체결시설에의 직간접적 접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거래소 회원 또는 브로커 협회와 사업상의 관계를 맺거나, 고용되거나 투자 또는 수익권을 가지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Pang 과 3 Crowns Capital 이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3,398,251.18 의 불법 이익 환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하였다.